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년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의결주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용어 순화 지침에 따라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함.
-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 등 공직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개정내용

가. 비밀엄수 의무 신설 (안 제3조의2)

나.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신설 (안 제22조 9호)

다. 임신공무원 출산전후 특별휴가 나누어 사용, 한번에 둘이상 출산 120일,

모성보호시간 다만 조항 신설 (12주이내, 36주이상 1일2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 제6항까지 내용 반영〉

(안 제23조제2항, 안제23조제4항)

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개정 (안 제23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20일의 특별휴가,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0년 이상인 경우 각각 1회 분할 사용 가능

- 마. 유산·사산휴가 신설, 인공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1일 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4항, 제5항 내용 반영>  
 (안 제23조제12항, 제13항)
- 바. 직무수행 우수 공무원 포상휴가 3일 이내 신설 (안제23조제14항)
- 사. 입영자녀 부모(공무원) 특별휴가 1일 신설 (안 제23조제15항)
- 아. 특별휴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조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붙임2 참조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6. 1 (원안의결)
  - 6) 조례안 의회 제출 : 2016. 6.
- 마. 참고자료
  - 1)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장기재직휴가 현황
  - 2)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포상휴가 현황
  -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강원도, 시군현황)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3조 중 “완수하여야”를 “완수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과 사를”을 “공(公)과 사(私)를”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근검, 절약)”을 “(근검·절약)”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조성하여야”를 “조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룩하여야”를 “이룩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무단으로”로, “당직근무자”를

“근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군수는 제4항”으로, “자에게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며 사사로운”을 “하며, 개인적인”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전보, 그밖의”를 “전화·팩스, 그 밖의”로,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휘를”을 “지휘·감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외 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탁하여야”를 “위탁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해직”을 “군수는 해직”으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를 “근무 중”로,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휴 가”를 “휴가”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자녀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해에 한정”을 “다음 해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복무규정”을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을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으로, “활용하지 아니할”을 “사용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초과 할”를 “초과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을 “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를 “(연가일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휴직일수가”를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로, “계산 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른 산출된 소수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1항에 따른 병가”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를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본문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을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출석수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2호부터 3호의 휴가일수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⑭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⑮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u>총 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생략)</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u>완수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u>총칙</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u> ----- -----.</p> <p>제2조(복무선서) ① <u>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 ----- ----- ----- ----- <u>완수해야 -----</u>.</p>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u></p>

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  
-----  
-----  
---- 존중해야 -----.

② -----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준수해야 -----.

제5조(친절·공정) ① -----  
공(公)과 사(私)를 -----  
-----  
-----  
처리해야 -----.

② -----  
-----  
----- 노력해야 -----.

③ -----  
-----  
----- 처리해야 -----.

제6조(근검·절약) ① -----  
-----  
----- 조성해야 -----.

② -----  
-----  
-- 이룩해야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자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

② 군수는 -----  
-----  
-----  
-----  
----- 해야 -----.

③-----무단  
으로-----  
근무-----  
--해서는 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4항-----  
--- 공무원에게는 -----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 하며, 개인적인 -----  
----- 안 된다.

② -----  
-----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그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  
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  
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  
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  
은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제10조(과건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과건근  
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과  
건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  
전화·팩스, 그 밖의 -----  
-----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  
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  
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  
----- 공무원은  
----- 원 소속 기관-----  
-----  
-----  
----- 지휘·감  
독을 --.

② ----- 공무원이 --  
----- 해  
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 원 소속  
기관----- 통보해  
야 -----.

제10조(과건근무) ① -----  
-----  
----- 공무원은 -----  
-----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  
- 공무원이 -----  
-----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우에는 -----  
-----  
----- 통보해야 -----.

③ -----  
-----  
-----  
-----  
-----  
-----  
----- 재외공무원 -----  
-----  
-----  
-----  
----- 위탁해야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  
-----  
----- 15일의 범위 -----  
위에서 -----  
-----.

제12조(복장 등) ① ----- 근무 -----  
-----  
----- 착용해야 -----  
-----.

② (생략)

제3장 휴가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휴가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자녀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③ -----  
-----  
-----  
-----  
-- 다음 해에 한정하여 -----  
-----

더한다.

1. 2. (생략)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

-----  
-----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  
----- 실시해야 -----.

② -----  
-----  
연 2회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허가해야 -----.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

⑤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

----- 사용하지 아니한

----- 초과할 -----.

⑥ -----

----- 그 -----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

----- 해당연도

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_\_\_\_\_  
\_\_\_\_\_ \* 당해연  
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른 산출된 소수점 -----

-----  
-----  
-----  
-----  
-----

③ -----  
----- 지각 -----  
-----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  
-----  
-----

제21조(병가) ① -----  
-----  
-----  
-----  
-----  
----- 지각·조퇴 -----  
-----

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 8. (생략)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  
-----  
---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  
----- 필요한 -----  
-----.

③ -----  
---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

제22조(공가) -----  
-----  
-----  
----- 허가  
해야 -----.

1. -----  
-----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  
-----

2.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  
----- 받을 ----- . <단서 삭제>

④ -----  
-----  
----- 받을 -----  
-----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  
-----  
-----  
----- .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

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⑩ (생략)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업-----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2호부터 3호의 휴가일수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 설>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⑭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

<신 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⑮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붙임1)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붙임2]

##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지출액이 없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의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연락처	(033) 330 - 2210

〈참고자료①〉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장기재직휴가 현황 (2016.4.12일기준)**

○ 50일 : 3개(강릉, 동해, 삼척), 30~40일 : 도, 5개(원주, 속초, 화천, 양구, 고성), 20~25일 : 2개(태백, 철원), 10~15일 : 4개(춘천, 홍천, 횡성, 양양), 5일 : 3개(평창, 영월, 정선), 없음 : 인제

연번	도, 시군	장기재직휴가 현황		
		내 용	일수	신설년월일
1	강 원 도	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0일	2015. 8. 7
2	춘 천 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10일	2010. 10. 28
3	원 주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0일	2013. 12. 13
4	강 릉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50일	2015. 12. 30
5	동 해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50일	2016. 4. 1
6	태 백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25일	2015. 6. 26
7	속 초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 20년 이상 재직자 명퇴시 추가 10일	30일	2015. 8. 13
8	삼 척 시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50일	2015. 12. 24
9	홍 천 군	재직기간 20년 이상 : 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추가 5일	10일	2015. 5. 6
10	횡 성 군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추가 5일	15일	2015. 10. 5
11	영 월 군	재직기간 20년 이상 : 5일	5일	2015. 5. 29
12	평 창 군	재직기간 20년 이상 : 5일	5일	2014. 5. 16
13	정 선 군	재직기간 20년 이상 : 5일	5일	2015. 4. 15
14	철 원 군	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20일	2016. 2. 18
15	화 천 군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5일	2016. 4. 5
16	양 구 군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5일	2015. 12. 11
17	인 제 군	없음	0	-
18	고 성 군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30일	2015. 10. 7
19	양 양 군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3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18일	2016. 1. 15

〈참고자료②〉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포상휴가 현황 (2016.4.12일기준)**

연번	도, 시군	포상(격려) 휴가일수	연번	도, 시군	포상(격려) 휴가일수
1	강 원 도	10	11	영 월 군	-
2	춘 천 시	-	12	평 창 군	-
3	원 주 시	3	13	정 선 군	3
4	강 릉 시	5	14	철 원 군	-
5	동 해 시	3	15	화 천 군	3
6	태 백 시	-	16	양 구 군	3
7	속 초 시	5	17	인 제 군	-
8	삼 척 시	5	18	고 성 군	-
9	홍 천 군	-	19	양 양 군	3
10	횡 성 군	3			

〈참고자료③〉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강원도, 시군현항)

[강원도]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동해시]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삼척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양양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